

【붙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9.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 완화 등 출원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글자체 디자인의 한글·한자 지정글자 구성 및 도면 개선(별표1 개정안)

글자체 디자인의 출원 시 제출하는 한글·한자의 지정글자 도면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출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심사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디자인의 도면으로 3D도면 파일 제출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서식 기재방법(안내문) 신설(별지 제1, 2, 3, 4, 8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출원인이 제출하는 3D도면 파일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파일 제출 전 심사용 뷰어에서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2D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신설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 명확화 및 사전동의 절차 명확화(안 제26조, 제35조, 제41조, 제46조, 제62조 및 별지 제2, 3호 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

라. 시행규칙 본칙과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의 일치(별지 제3호 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 일부개정안)

시행규칙 본칙의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서식에 이를 명확히 함

마. 서식 기재방법의 인용 항목 오기재 사항 정정(안 제24조 제1항 제13호)

시행규칙 제24조 제13호의 서식 기재방법 인용 항목을 정정하여 관
련 인용 항목을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0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000

- 규제 신설·폐지 등, 00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3호 중 “기재방법 제18호아목”을 “기재방법 제19호아목”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보정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제1호 제목의 ‘지정글자 500자’를 ‘지정글자 209자’하고,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1】과 【지정글자 도면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3】내지 【지정글자 도면 5】를 삭제한다.

【지정글자 도면 1】

가간값개거게결곶과
관광팬교권궤궤그극
근금급기깃께끝깎넌
냐너네녀노높눈놀누
느는늣니다닭대돼됐
되된됴뒤뵈든들듭دت
등똥똥랴래러럼럽렁
렸룩르리린림립막매
먹멧모몹몹물미민민
바밖밖밭버봄빌빚빠
사삼새생서션소손쇄
숨쉬쉽스슨슬승시식
싫싫쌔씩

【지정글자 도면 2】

얏애야약양애어억없
역연열오옴와완왔왜
외요용운위원윳웬
위윳윳으은을옴음읍
의익인일임잇잇자중
죄질집짹좃좃쳐쳐쳐
최추출충칙커کم공큰
클터터특틀과판패퍼
편평폐피하한훤향형
호훈화확환활황회획
훈훈혹흘희힌힘

별표 1의 제5호 중 제5호 제목의 ‘지정글자 900자’를 ‘지정글자 310자’로 하고,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1】 과 【지정글자 도면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의 【지정글자 도면 3】 내지 【지정글자 도면 9】 를 삭제한다.

【지정글자 도면 1】

可干甘甲更車犬見曲
工果久九口求弓金及
其己乃內女年丹單大
刀東力立馬末面母毛
木目戊文門勿未米民
白兵丙本夫父不非飛
事史四士巳山上生西
夕石世小手水承示食
申臣身心十氏我也羊
言永五烏玉瓦曰王用
于又牛雨月由酉肉乙
衣二以已而耳人一日
入子自長朱才典田丁
井竹中重之止至且冊
尺千川寸丑齒七土八
貝片皮必匹亥革乎戶
下火凶

【지정글자 도면 2】

假價家歌街角講改開
舉健潔庚慶競經耕驚
界鷄考功過關教救國
君歸勤既氣端對獨動
同頭郎旅練烈勞綠柳
流理滿望勉武無尾發
拜番病步佛比鼻使殺
賞先船選鮮成省聲速
收數秀純習乘勝新實
兒惡仰哀野弱養嚴餘
與逆然研英藝誤屋憂
遇運怨爲柔醫印引作
將赤戰電節絕靜第製
兆助祖從終鐘晝增直
盡眞辰進着察參處妻
體初最春出忠就致快
打宅特判便篇風漢韓
含害鄉虛惠婚華患興
黑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

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특정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 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도면이 정상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특정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 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도면이 정상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1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사업자등록증명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그 외 제출 서류 명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2호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를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으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9호 참조)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사업자등록증명
-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 (그 외 제출 서류 명시)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E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특정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 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도면이 정상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특정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 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도면이 정상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의 제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디자인을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D 도면 제작 프로그램 간 호환성 문제로 인해 모든 3D 도면은 특정 뷰어에서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은 3D 도면을 제출하기 전에 심사전용 뷰어에서 도면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도면이 정상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2D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건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 ----- ----- ----- ----- ----- ----- -----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u>기재방법 제18호아목</u> 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	13. ----- ----- ----- ----- <u>기재방법 제19호아목</u> ----- ----- ----- -----

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 반한 경우 14. ~ 19.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① (생 략) <u><신 설></u>	----- ----- 14. ~ 1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① (현행 과 같음) <u>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 른 보정서를 받으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 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② (생 략)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생 략) <u><신 설></u>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현 행과 같음) <u>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 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 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u>

② ~ ④ (생략)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생략) <u><신설></u>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출원의 분할) (생략) <u><신설></u>	제46조(출원의 분할) ① (현행 제6조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 등) ① ~ ④ (생략)

<신설>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4항에 따
른 보정서를 받으면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동
이용 대상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